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2024. 10. 11.)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하나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4-123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4년 9월 27일(금)

라. 회부일자: 2024년 9월 30일(월)

2. 제출사유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위탁 사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구 동물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1)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하는 캠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려견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2) 민간 운영의 창의성과 참신성 및 유연성으로 안정적인 운영 도모

나. 민간위탁의 내용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2년)

2) 위탁운영 시설현황

- 시설명 :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 위　치 : 난지한강공원 內(상암동 482-179, 482-180)
- 면　적 : 전체면적 2,863㎡(866평) / 시설면적 816㎡(247평)

3) 위탁사무 범위 :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관리 및 운영
- 캠핑장 운영, 홍보/마케팅 등
-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행사 개발 및 운영
- 캠핑장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등

4) 소요예산 : 330,000천원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6)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다. 추진 일정

1) 공개모집 공고 : 2024. 11. 1.
2) 신청서 접수 : 2024 12. 2. ~ 12. 6.
3) 선정 심사 : 2024 12. 9. ~ 12. 13. (기간 중 1일)
4) 심사결과 발표 : 2024. 12. 17.
5) 협약 체결 : 2024. 12. 27.
6) 위탁 운영 : 2025. 1. 1. ~ 2026. 12. 31. (2년)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
3. 구의회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조례제정 : 제271회 임시회 상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제27조(관리 ·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 기타사항 :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붙임1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난지한강공원 내에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이하 “캠핑장”)을 조성하고 캠핑장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5조[1]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캠핑장은 총면적 약 2,863㎡ 규모로 캠핑테크, 놀이기구, 관리동 등의 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9월 개장하였음. 현재 구에서 직영(경제진흥과 동물진흥팀)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1.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현황 >

- 사업위치: 난지한강공원 內(상암동 482-179, 482-180)
- 규　　모: 전체면적 2,863㎡(866평) / 시설면적 816㎡(247평)

구분	놀이시설	캠핑시설	비고
중소형견	585㎡(177평)	1,956㎡(593평)	▸기준: 체고기준 40cm 또는 몸무게 15kg 기준
대 형 견	231㎡(70평)	91㎡(27평)	

- 주요시설
  - ・기본시설: 캠핑데크(20), 놀이기구(2), CCTV(8), 안전휀스, 반려견화장실(2)・음수대(2)
  - ・기타시설: 관리동(관리사무소, 상담실, 반려견샤워실), 안내판(이용수칙), 피크닉파라솔 등

○ 캠핑장과 같은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2]이며, 이번 임시회에 캠핑장 운

---

1)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신설 2021.5.6.>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에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 동의안과 같이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은 조사·검사·검증·관리업무 등으로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가 아니고,[3)]

○ 또한, 민간위탁 사무는 캠핑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행사 개발 및 운영,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이러한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4)]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역량과 경험을 쌓아온 외부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직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캠핑장 운영시간과 공무원 근무시간 불일치에 따른 구민 불편, 관리비용 전액 구비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 등을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기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캠핑장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3억 3천만 원임. 총 4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인건비는 1억 8,580만 원임.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비해 운영비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 민간 위탁으로 운영 시 기대하는 효과

---

3)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바, 수익 증대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검토한 바, 반려동물 캠핑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 기타 기업과의 협업 및 다양한 행사 운영 경험 등을 갖춘 민간기관이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캠핑장 운영에 있어 캠핑장 운영 경험자를 활용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캠핑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자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마포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민간 위탁에 따른 사용료 인상과 불친절 및 공익성 저하 등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구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붙임 1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 위탁시설

ㅇ 시 설 명: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ㅇ 사업위치: 난지한강공원 內(상암동 482-179, 482-180)

ㅇ 규　　모: 전체면적 2,863㎡(866평) / 시설면적 816㎡(247평)

구분	놀이시설	캠핑시설	비고
중소형견	585㎡(177평)	1,956㎡(593평)	▸기준: 체고기준 40cm 또는 몸무게 15kg 기준
대 형 견	231㎡(70평)	91㎡(27평)	

ㅇ 주요시설

- 기본시설: 캠핑데크(20), 놀이기구(2), CCTV(8), 안전휀스, 반려견화장실(2)·음수대(2)
- 기타시설: 관리동(관리사무소, 상담실, 반려견샤워실), 안내판(이용수칙), 피크닉파라솔 등

□ 위탁운영 개요

ㅇ 위탁기간: 위탁개시일 ~ 2026. 12. 31.

ㅇ 위탁사무: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관리 및 운영

ㅇ 인력구성(안): 4명(팀장1, 팀원3)

구 분	인원	주요 업무
팀 장	1	•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운영 총괄 • 행정, 예산, 홍보/마케팅, 행사 등 • 시설 안전·방역 관리
팀 원	3	• 이용자 입장관리 및 매표업무 • 캠핑장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 팀장 업무보조 등

※ 수탁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조직구성 및 세부인력 구성 변경 가능

ㅇ 운영일시: 화~일(10:00 ~ 22:00)　　※ 매주 월요일, 명절 휴장

ㅇ 위탁사업비: 330,000천원(2025년도)

구 분	산 출 내 용	소요예산액(천원)
인건비	○ 운영인력 4명	185,800
행사운영비	○ 물놀이장 및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90,000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4,200

※ 사업 신청시 인건비 및 사업비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맞게 조정 가능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비용 추계(안)

(단위 : 천원)

예산항목(구분)	상세내역	소요예산
수지(A-B)		△261,456
세입(A)	※ 캠핑장 이용 상황에 따라 추계 변동 가능	68,544
세출(B)		330,000

세입예산(A)			68,544
이용료			68,544
	데크	5,000원×20개×24일×12월×70%	20,160
	그늘막 텐트	5,000원×20개×24일×12월×70%	20,160
	캠핑 테이블	3,000원×20개×24일×12월×70%	12,096
	캠핑 의자	2,000원×20개×24일×12월×70%	8,064
	돗자리	2,000원×20개×24일×12월×70%	8,064

세출예산(B)			330,000
인건비			185,800
	기본급	팀장(2급)	3,030,000원×12개월×1명=36,360,000원
		팀원(5급)	2,344,000원×12개월×1명=28,128,000원
		팀원(관리직)	2,320,000원×12개월×2명=55,680,000원
			120,160
	수당	명절휴가비	3,030,000원×120%×1명=3,636,000원
			2,344,000원×120%×1명=2,812,800원
			2,320,000원×120%×2명=5,568,000원
			12,016
		초과근무수당	(3,030,000원×110%) / 209시간 × 1.5 × 20시간 × 1명 × 12개월
			(2,344,000원×110%) / 209시간 × 1.5 × 20시간 × 1명 × 12개월
			(2,320,000원×110%) / 209시간 × 1.5 × 20시간 × 2명 × 12개월
			18,974
		연차미사용 수당	(3,030,000원÷20일)×1명×5일=757,500원
			(2,344,000원÷20일)×1명×5일=586,000원
			(2,320,000원÷20일)×2명×5일=1,160,000원
			2,504
	4대 보험	국민연금	151,158,800원×4.5%=6,802,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1,158,800원×3.545%=5,359,000원
		장기요양보험료	151,158,800원×3.545%×12.81%=686,000원
		고용	151,158,800원×1.8%=2,721,000원
		산재	151,158,800원×1.03%=1,557,000원
			17,125
	퇴직금적립금		(3,030,000원÷20일)×1명×30일=4,545,000원
			(2,344,000원÷20일)×1명×30일=3,516,000원
			(2,320,000원÷20일)×2명×30일=6,960,000원
			15,021
행사운영비			90,000
	행사프로그램	하절기(1개월) 물놀이장 운영	50,000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40,000
일반운영비			54,200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300,000원×12개월=3,600,000원
		캠핑용품 구매	300,000원×12개월=3,600,000원
		청소등시설관리용품	300,000원×12개월=3,600,000원
		사무기기 렌탈비	500,000원×12개월=6,000,000원
		피복비	125,000원×4명×2회=1,000,000원
		홍보비	온.오프라인 홍보 4,000,000원
			21,800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00원×12개월=2,400,000원
		수도요금	200,000원×12개월=2,400,000원
		통신요금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시설 유지보수비	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방역 및 소독	200,000원×12개월=3,400,000원
			32,400

※ 인건비 산출 근거: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팀장: 2급 1호봉, 팀원: 5급 1호봉 1명, 관리직 1호봉 2명)

붙임 2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구의회 동의)

구 분	신규위탁(공개모집)	신규위탁(수의협약)	비고
① 사전조사와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민간위탁(시행사무)의 적정성 사전 검토		조례 §4
② 추진계획 수립	법적근거, 위탁사무 세부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③ 구의회 동의	**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조례 §6①)		조례 §5
④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조례 §6
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조례 §7
⑥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	조례 §11
⑦ 위·수탁 협약체결	위탁 협약 체결(위탁사실 공고)		조례 §13
⑧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 시범운영,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조례 §14, 20
⑨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지도·감독: 필요 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반기별 1회) 이상 ► 처리상황의 감사: 필요 시 ► 성과평가: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조례 §14, 18, 21